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민병덕 · 조계원 · 맹성규
강득구 · 백혜련 · 양부남
이수진 · 오세희 · 박민규
박홍배 · 김문수 · 윤후덕
박 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(USIM) 고 유식별정보,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.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,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,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,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‘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’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(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

제8항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, “지급 절차 등”을 “지급절차,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등”으로 한다.

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가입자식별모듈 고유식별정보,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식별모듈의 무상 교체,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,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,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이용자 보호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2조(이용자 보호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가입자식별모듈 고유 식별정보,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등 정보 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식별모듈의 무상 교체,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,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,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· 기준 · 절차, 평가 결과 활용,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, 보증보험의 가입 · 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	⑧ ----- <u>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급절차, 이용자 보호조</u>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치의 기준 및 절차 등</u> 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